#### PBL기반 금융빅데이터 분석가 과정

# Domain Knowledge(5) 외환이해

- 1. 외환거래법 개괄 소개 2. 외환시장 이해

# 1. 외환거래법 개괄 소개

1. 외국환거래법 개괄

2. 지급과 영수

3. 자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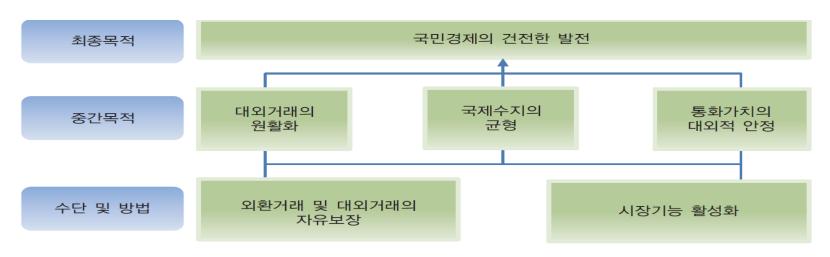
4. 위규사례

## 외국환거래 변천 추이

- 1961.12 외국환관리법 제정
- 1996년 6월 경상거래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외국환은행 신고제 도입, 외국환은행의 설치 및 외환 업무 자유화
- 1996. 12월 OECD 가입
- 1997.12 외환위기 발생(IMF구제금융),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환율변동폭 폐지)
- 1998. 7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1998. 6 제1차 외환자유화 방안(외환거래 자유화의 단계적인 추진방안) 발표
-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키로 함)
- 1999. 4 외국환거래법 시행(外國換管理法폐지)
- 제1차 제1단계 조치 실시(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환거래 자유화,
-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2001. 1 제1차 제2단계 조치 실시(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
- 2002. 4 제2차 외환자유화 방안(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
- 2002. 7 제2차 1단계 조치(외환제도 선진화 계획) 실시
- 2006. 1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2006. 5 제2차 외환자유화 방안 수정안(외환자유화 추진 방안) 발표
- 2008.10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자유화 추진일정을 잠정 유보
- 2013년 1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비율 강화
-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 2015년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발표
- 7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규제·관리 위주의「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Control Law)을 폐지하고 외환거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을 제정하여 1999년 4월부터 시행

#### 외국환 거래법 목적.특징



자료: BOK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등록요건
 o 자본: 재무구조 적정(금융감독원이 확인)
 o 시설: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망 연결(한국은행이 확인)
 o 인력: 영업소별 경력 2년 이상의 외환업무종사자 2인 이상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종류 (금융회사로 제한)
 o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 당해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외국환업무 영위 가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행위 및 거래는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됨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외국환은행으로 정해 대부분의 외환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해당기관별 업무를 규정

#### 외국환은행

- □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국내영업소로서 외국환업무취급 기관 중 업무범위가 가장 넓음
- o 외국환거래법상의 모든 외국환업무 영위 가능
-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외화예금,수입 등의 업무를 독점적으로 영위
- ⇒ 외국환관리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대신 독점적 업무영역 확보를 통해 수익을 보장

## 기획재정부장관 비상조치권(safe guard)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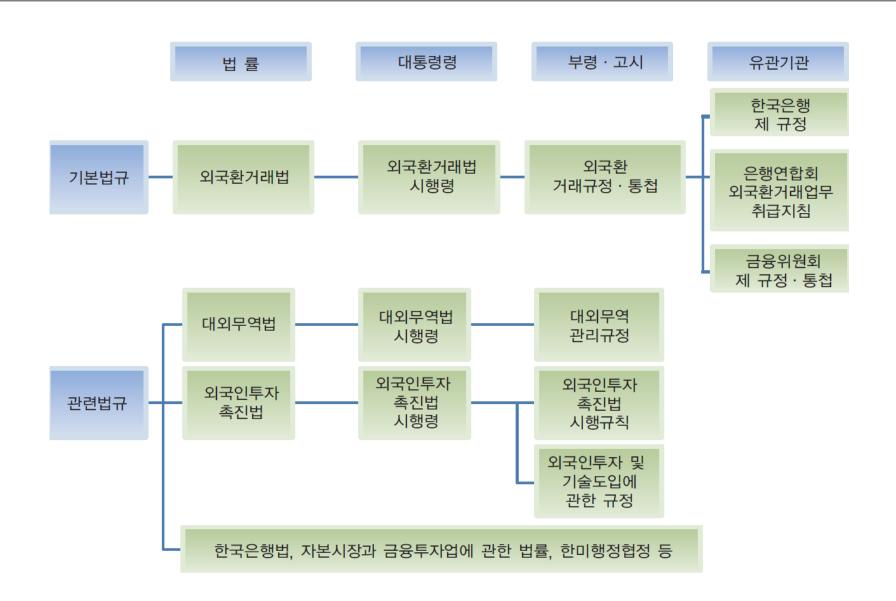
- → 유사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 기획재정부장관의 비상조치권(safeguard, 외국환거래법 6조)
- o 대외지급 · 수령 및 대외거래 일시 정지
- o 자본거래 허가제도 실시
- o 가변예치의무 제도 부과 등
- □ 외환정보집중기관 (한국은행) 지정 · 운영
- o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정보를 중계·집중·교환
- □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 외국환거래 정보 제공
-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유 형	주요내용	시행요건			
대외결제ㆍ거래의 일시정지 (제6조 1항 1호)	•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영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 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외환집중제 (제6조 1항 2호)	•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 은·정부기관·외평기금 등에 의 보관·예치·매각 의무 부과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거래허가제 (제6조 2항)	• 자본거래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 국제수지·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 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변예치의무제 (제6조 2항)	• 자본거래시 당해거래와 관련 해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 부를 한은·외평기금 또는 금 융기관에 예치토록 의무화	<ul> <li>자본이동으로 인해 통화정책·환율정 책·기타 거시정책수행에 있어 심각 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li> </ul>			

#### 외국환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원적으로 부여
- o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환수급 기반조성, 외환시장의 안정, 기준환율 결정, 외평기금 운용관리, 긴급시 비상조치권 등 외환정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
- o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및 감독, 자본거래 신고,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지급 및 영수방법 신고, 각종 검사 감독 및 제재 권한도 보유
-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상의 권한 중 상당부분을 다른 기관에 위임, 위탁
- o 수탁기관은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국환은행 등

## 외국환 법규 적용 체계



##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1. 속지주의 : 대한민국 내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

2. 속인주의 : 거주자에 대해 외국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

3. 보호주의 : 대한민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외환거래에 대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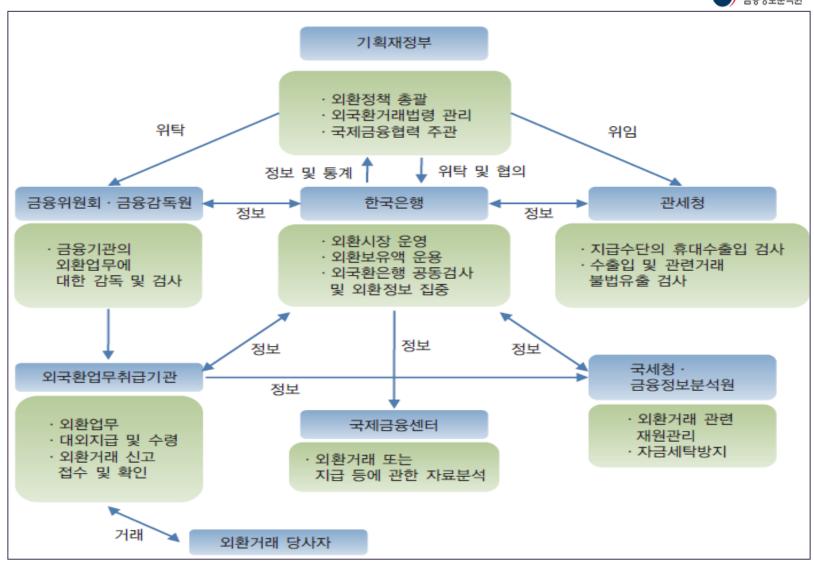
거래 당사자	표시(결제)통화	외국환거래법 적용
거주자 ↔ 거주자	원화	적용 안됨
거주자 ↔ 거주자	외화	적용
거주자 ↔ 비거주자	원화, 외화	적용
비거주자 ↔ 비거주자	원화	적용
비거주자 ↔ 비거주자	외화	적용 안됨

## 『외국환거래법』제3조 및『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0조

	거주자	비거주자		
대한 민국 국민	<ul> <li>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li> <li>비거주자였던 자가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li> <li>그 밖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li> </ul>	<ul> <li>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자</li> <li>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이 경우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li> </ul>		
외 국 인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ul> <li>거주자였던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체재 중인 자</li> <li>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 ·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li> <li>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로 입국하는 자</li> <li>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협정에 의한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국의구성원 · 군속 · 초청계약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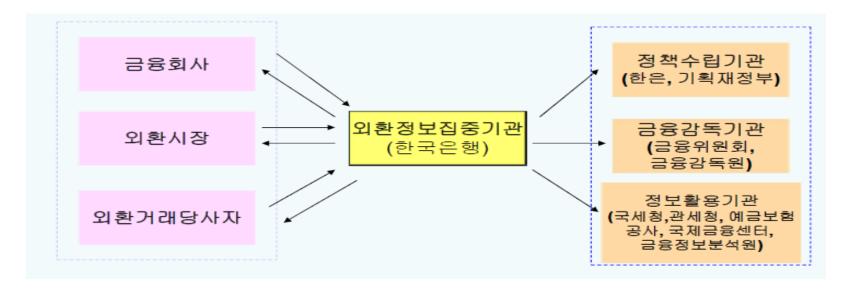
## 외국환거래 관리체계도





#### 외국환정보집중기관

□ 의의
o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 집중, 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
□ 외환정보집중기관 지정
o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을 우리나라 유일의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
□ 외환정보의 집중
o 보고기관(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해야 함
(집중기관은 일정한 외국환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



#### 외국환중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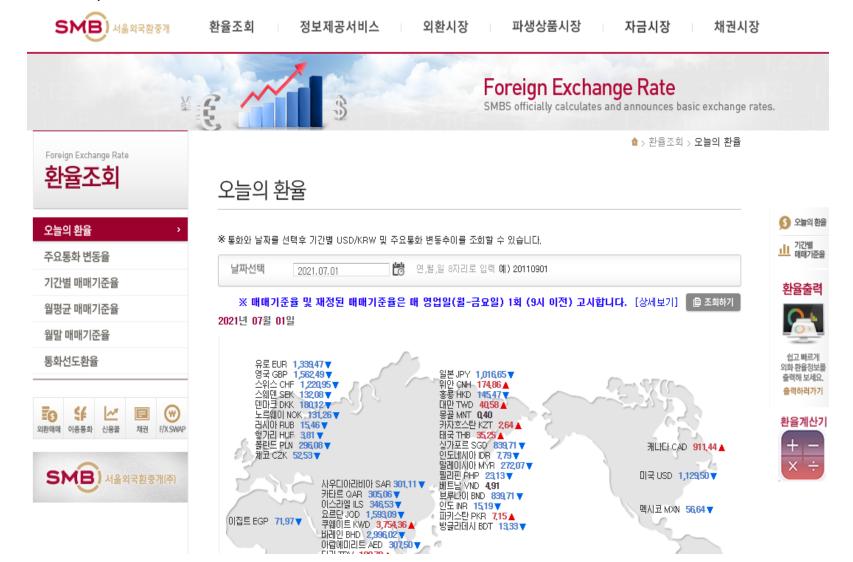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

현재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기관

- →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 자금중개, IPS 외국환중개, ICAP, Tullett Prebon, BGC, GFI, Nittan Capital, Tradition 등
- →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려면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기재부장관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 사례 : 서울외국환 중개 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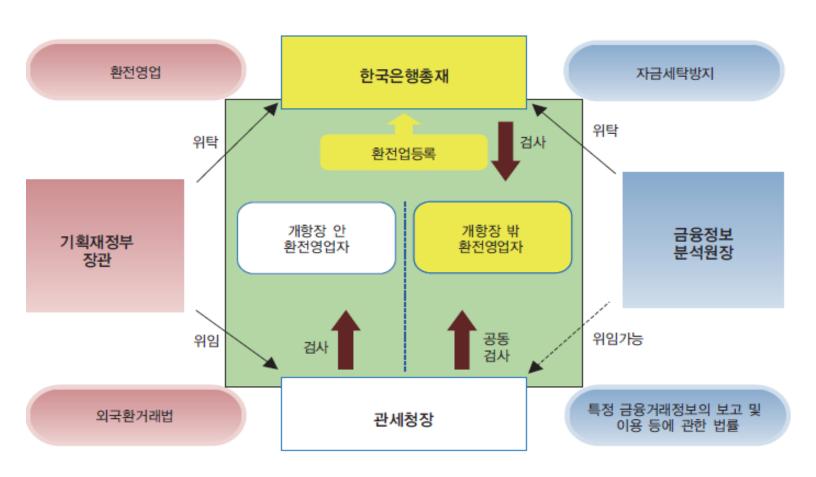
http://www.smbs.b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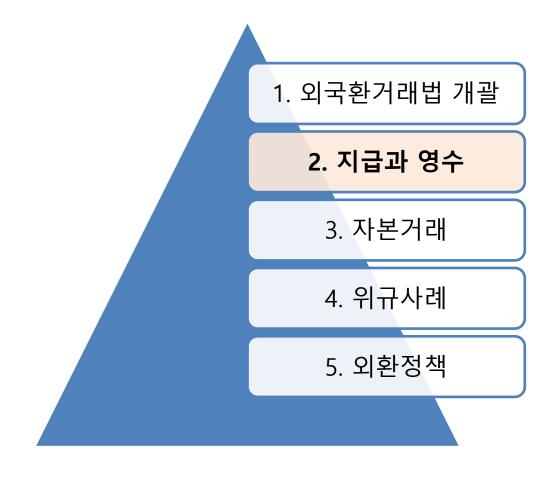
####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체계

#### 환전영업자

외국통화의 매입 및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업무: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 2천달러(동일자·동일인 기준) 이하 금액은 거주자에게 매도 업무가능, 비거주자도 가능(매각 범위내 한도)



# 1. 외환거래법 개괄 소개



## 지급 및 수령: 기본절차

- □ 외국환거래(채권 채무발생의 원인행위)
- o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경상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 →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적용
- o 자본거래 → 외국환거래법 적용
- □ 지급 및 수령(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행위)
- o 외국환거래가 인정된 거래인 경우,
- "지급 및 수령"시 별도의 신고 등이 필요 없음
- o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

####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법령 체계

	경상거래	지본거래
원인거래	「대외무역법」, 「관세법」 적용 (수출입승인,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적용 (신고, 신고수리 등)
지급 및 수령 (결제행위)	「외국환거래법」적용 (지급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및 수령)	「외국환거래법」적용 (인정된 거래로 확인되면 지급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및 수령)

## 대외거래 결제(지급과 영수 절차)

- □ 외국환은행의 지급 및 수령 확인 ,지급 등의 증빙서류 제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2021.7. 기준) 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지급 등을 하기 전에 신고 등 의무 이행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 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령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함
- □ 신고 등 의무 이행여부 확인
  o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미화 2만불
  (동일자 · 동일인 기준)을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 등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
- → 취득경위 입증서류(수출계약서 등), 영수확인서(국민거주자+5만불 초과)

## 대외거래 결제(지급과 영수 절차)

-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지급 또는 수령을 할 수 있는 경우
- ①「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의 <u>지정거래외국환은</u> <u>행을 통한 지급</u>. 다만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해당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②「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2만달러(동일자·동일인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당 거래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함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및 수령
- ④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의한 자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후 60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 면제가 가능
- ⑤ 전년도 수출실적이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 지급.\* 이 경우 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 다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지역내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⑥「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해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해야 함
- ⑦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의한 자금 중 관련 증빙서류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경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지정인 성명(상호): (인) 주 소: (E-Mail 주소: 대리인 성명: (인) 주 소: (E-Mail 주소: (한-Mail 주소: (해외교포여신취급 국외금융 기관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h래 항목에 대하여 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변경 거 래 항 목	거 래 항 목
( ) 1.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연간 미화 5 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 (제4-3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8호) - 금년중 송금누계액(변경전 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 U\$ - 매년 자동갱신 등록(□ 신청□ 해지) ( ) 2. 해외체재비(제4-5조 제2항) ( ) 8.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소득 또는 연둥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5만불 이하의 지급(제4-4조 제1항 제3호, 제2항) ( ) 9.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재경원고시 1995-23, 95.6.28) ( ) 13.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등(제8-2조) ( ) 14.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및 사후관리(제9장 제2절) ( ) 16. 환전영업자(제3-2조 제4항) ( ) 32.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도입 및 영업수익 대외송금(제9장 제3절) ( ) 33. 상호계산 실시업체(제5-5조) ( ) 53. 거주자의 외화중권발행(제7-22조 제2항)	대기교 하다 대기교

## 대외거래 결제(해외여행경비)

해외여행경비는 크게 해외유학생16)경비, 해외체재비17) 및 일반 해외여행자18)경비로 구분 2001년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지급한도 등이 전면 자유화

#### <해외여행경비>

- □ 해외유학생 경비, 해외체재자 경비 및 일반 해외여행 경비로 구분 o 해외유학생 경비 :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수학, 연구 등을
- 목적(6개월 이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해외유학생이 현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유학생 명의,
- 매년 재학사실증명 사후관리, 연간 송금누계액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 1만불 초과 환전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외국환은행)
- 해외체재자 경비: 해외로 장기간 출장 또는 파견을 나가는 경우에(30일 이상)필요 한 경비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연간 송금누계액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 → 1만불 초과 환전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외국환은행)
- 일반 해외여행 경비 :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를 제외한 여타일반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비
  - → 일반 여행자,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단,
- **미화현금1만불을넘는외화를가지고출국시** 세관에신고

## 대외거래 결제(해외이주비)

-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절차>
- □ 해외이주비 : 관련 법령에 의해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가 해외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 : 해외이주나 외국에서의 장기간 거주등을 통해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 권을 취득한 개인이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절차
- □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지만 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가 외국이거나 외국에서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면 본인 명의의 국내재산 송금이 가능

해외이주비 지급: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거래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뿐만 아니라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도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 없이국외로 반출 가능

#### (지급증빙서류)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국내예금.신탁계정:,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 대외거래 결제(지급과영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결제방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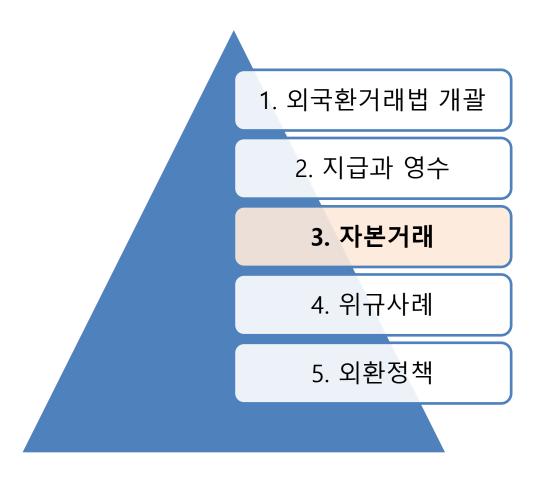
결제방법은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를 원칙

≺비정상적 지급 및 영수 시 신고 : 지급 등 방법신고>

정상적 결제 방법	비정상적 결제 방법			
거래대금 총액 지급 등	상계, 상호계산 후 잔액만 지급 등			
수출입 전후 일정기간내에 지급 등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거래당사자간에 지급 등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등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			

→ 비정상적 결제방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 유출입수단으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재부 신고 사항(한국은행에 신고)

# 1. 외환거래법 개괄 소개



#### 자본거래 유형별 관련 법규.신고

#### 자본거래 범위

OECD의「자본이동 자유화 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23)과 기존 자본거래 규제체제를 고려하여 예금,금전대차, 증권거래, 부동산 등 1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규정

ନ ଶୃ	관련 법규
예금 및 신탁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2절
금전대차 및 채무의 보증거래	·「외국환거래규정」제7장 제3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지급수단, 채권 등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외국환거래규정」제7장 제4절
증권의 발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5절
증권의 취득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6절
파생상품거래	· 「외국환거래규정」제7장 제7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4절, 제5절
국내기업 등의 해외지사,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외국환거래규정」제9장 제2절, 제3절
기타 자본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8절
현지금융	· 「외국환거래규정」 제8장
해외직접투자	·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 <자본거래 신고>

- □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o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거래는 사후보고 또는 신 고면제
-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는 2006.1.1부터 폐지
- □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 신고접수 권한을 대부분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
-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은 금융위 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에 위탁

#### 금전대차거래

금전대차거래는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루어지는 금전의 차입 및 대출거래

거주자의 금전대차거래

- □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등의 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함
- o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함
-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 □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한국은행에 신고

# 금전대차거래

		외화차입 <sup>®</sup>	외화대출		
거주자간		· 자유화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수령하여야 함)	· 자유화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수령하여야 함)		
	외국환은행	· 1년 이하 <sup>2</sup> : 자유화 · 1년 초과 <sup>2</sup> : 건당 5천만달러 초과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자유화 (다른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지자체, 공공기관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른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정부 출자· 출연 법인 또는 정부업무 수탁법인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다만 3천만달러 <sup>3)</sup> 초과시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신고)			
	영리법인				
	개인 · 비영리법인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원화처입	원화대출		
거	주자간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아님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아님		
거주자와	10억원 이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른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신고)		
비거주자간	10억원 초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증권발행의 유형별 신고 여부

발행주체	장소	통화	신고 여부
	국내 거주자 외국	원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님
21.7.1		외화	신고 없이 가능
거수사		원화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
		외화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관련 규정 준용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
	국내 원화·외화· 원화연계외화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
비거주자	이그	원화 · 원화연계외화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
	외국	외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님

#### 거주자 해외부동산 취득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신규신고) 2년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2년 이상 주거 목적, 주거 이외 목적의 경우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에 관한 권리(물권 ·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취득 →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관련내역의 외환전산망 입력 및 보고서 징구 등 제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o 또한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취득보고,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해야 할 의무



#### 해외 직접투자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란?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및 인력 등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외거래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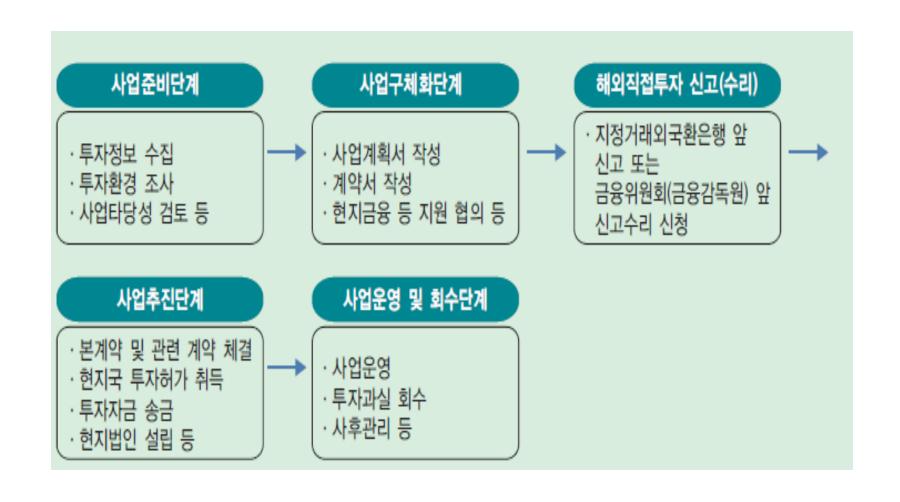
→ 직접투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당금, 이자 또는 자본이득(capital gain)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구분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앞 신규신고 할 의무
- 한편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10 이상인경우,
- 투자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원자재나 제품의
-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 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시 해외직접 투자로 인정된다. 이 외에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도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포함
-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 할 의무 \* 과거 변경신고 대상이었으나, '18.1.1.부터 변경보고 대상으로 변경
-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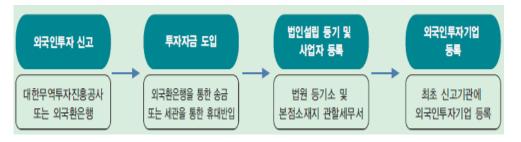
####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 자로 인정된다.
- 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임원 파견 또는 선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체결,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형태에 따라 신주 등의 취득, 기존주식 등의 취득,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및 장기차관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다.
- 투자 관련 내용에 따라 수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특히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 절차



## 증권투자(해외)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경영참여 없이 시세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

#### 증권투자 특징

- 1. 직접투자에 비해 투자기간이 비교적 단기
- 2.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
- 3. 일부 국가에서는 필요시 자본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가변예치의무제도 및 자본거래허가제도 등 안전장치(safeguard)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한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쳐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량 증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환율, 금리, 주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 매년 4월 배당효과, 1월 리밸런싱 효과

## 증권투자: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제도 변천

1981년 10월 투자신탁회사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행 허용

1984년 6월 외국투자전용회사의 국내증권 매매 허용

7월 Korea Fund 설립

1992년 1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국내주식시장 개방(상장주식 투자 가능)

1994년 6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채권투자 허용

-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상장 전환사채

-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국공채

1996년 5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가지수 선물거래 허용

1997년 11월 외국인투자자의 장외등록주식(KOSDAQ) 투자 허용

12월 외국인투자자의 채권투자한도 폐지

1998년 7월 외국인투자자의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채권 투자 허용

1999년 1월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확대(서적출판업, 주정제조업 등)

7월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확대(유·무선 전신·전화업, 기타 전기통신업)

2001년 2월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에 지적재산권, 주식, 부동산 등 추가

2007년 12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자금 환전·이체 절차 개선, 투자전용계정 통합

2013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1)

(기간중, 억달러)

	19년	20년	11월	12월	21년	1월	2월	3월
<ul><li>전 체</li></ul>	101.6	34.7	50.7	-23.6	108.2	-10.7	61.2	57.7
(주 식 <sup>2)</sup> )	20.0	-182.4	55.2	-21.9	-78.3	-23.9	-28.6	-25.8
(채 권 <sup>3)</sup> )	81.6	217.1	-4.5	-1.7	186.6	13.2	89.9	83.5

주: 1) 결제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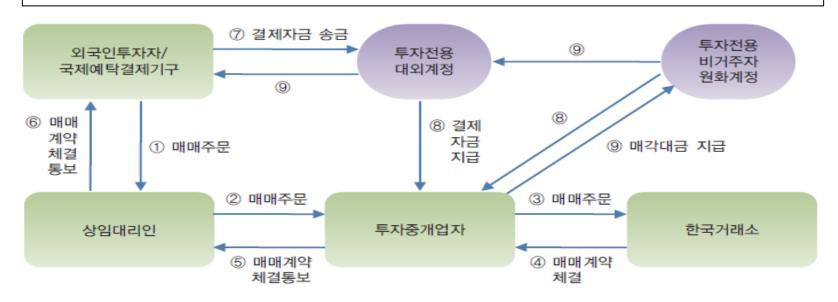
2)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거래 및 기업공개(IPO) 포함(단, ETF-ELW-ETN 등은 제외)

3) 상장채권 장내·외거래 기준(RP 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

BOK

#### 증권투자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 비거주자(국민은 해외영주권자만 포함)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이하'외국인투자자')는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한 후 동 계정을 통해 관련 자금을 예치·처분하여야 한다.
- 또한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 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 이때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파생상품거래와 연계된 증권으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장유가증권 투자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로 등록하여 투자자등록번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 또한 투자중개업자 등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자기 명의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 이 경우 예치 및 처분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대외계정 제한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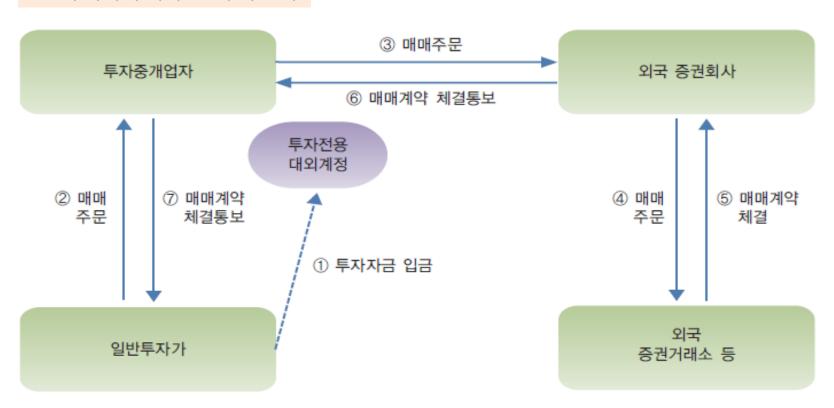


#### 증권투자: 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예외사항 o 신고예외사항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절차



## 외화예금

외화예금은 계좌를 개설하는 주체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예금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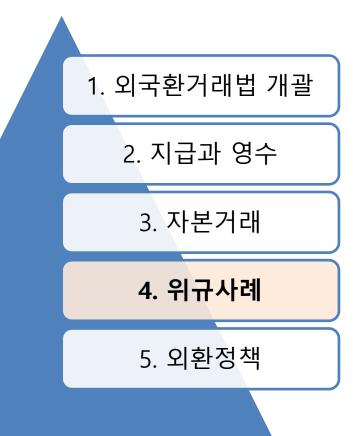
-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1995년 2월 처음으로 허용
- 2001년 1월 대부분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예금→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동 은행을 통해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 다만 일반거주자가 해외예금을 하기 위하여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화예금: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외화예금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예금 제도 1964년 11월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78년 12월 모든 거주자로 확대

	예금개설자	예치가능자금	처분용도
거주자계정 (거주자외화신탁계정)	거주자	<ul><li>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li><li>내국지급수단 대가로 외국 환은행 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li></ul>	· 제한없음 다만 대외지급시는 외국환 은행의 지급확인 필요
대외계정 (비거주자 외화신탁계정)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 에게 대외지급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환은 행 해외지점간 또는 외국 환은행 해외지점간 외화결 제에 따라 취득한 대외지 급수단 등 · 국내에서 증권발행으로 조 달한 자금	· 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 신탁계정으로의 이체 ·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외국환은행 등으로부
해외이주자계정	해외이주자, 재외동포	·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 정자의 자기명의 재산, 재 외동포의 자기명의 국내재 산 처분 후 취득한 내국지 급수단을 대가로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 인정된 해외이주비 및 국내 재산의 송금 · 외국환은행 등에 내국지급 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 1. 외환거래법 개괄 소개



## 해외직접투자

•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 하면 신고

'12.7.1.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0만달러를 송금 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관련법규) 거수자가 해외	식섭투자를 하고지	ㅏ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상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위반금액의 2%)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2.3백만원 부과 대상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

####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변경

-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변경 보고
- · 거주자(A)는 동업자(B)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
- · 동업자(B)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되었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 ⇒
-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 행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18.1.1.부터 사전 변경신고에서 사후 변경보고로 변경
- □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 \* 신고의무에서 보고의무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
- ☞ (유의사항)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고대상

## 해외직접투자 관련

-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 기한내 제출
- 1.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 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
- □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 \* 종전에는 1백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이 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7백만원)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7백만원 부과 대상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 해외부동산 취득

•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

.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 행장 앞 신고를 누락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위반금액의 2%)되어, 위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8백만원 부과 대상

(유의사항)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

- ➤ ①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이며,
- ②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

####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 '12.11.1.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 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유의사항)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신고할 의무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취득

•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예외: 증권회사를 통하는 경우)

.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
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2%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위반금액의 4%)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대상

(유의사항)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 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 취득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13.7.1.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 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 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 (관련법규)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 규정 제7-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2호 :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외국 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 \*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장관 앞 신고할 의무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

## 해외예금

•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17.6.1. 매각자금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
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과태료 금
액 하한이 50만원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하한이 상향(1백만원)되어, 사례가 현재 발생
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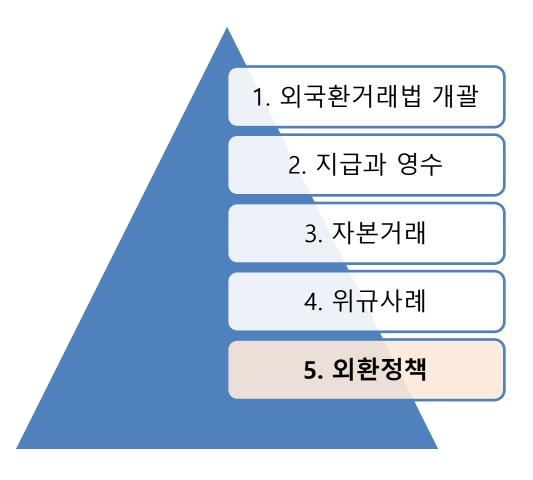
(유의사항)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 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

- '16.7.1. 거주자(A)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B)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거주자(A)는 한국은행 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 ⇒ A에 대 하여 과태료(400만원)
-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 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2%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위반금액의 4%)되어,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8백만원 부과 대상

# 1. 외환거래법 개괄 소개



## 환율정책의 목표

-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
-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u>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 전환하면</u>서 물가목표와 환율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u>외부충격에 따라 환율</u>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또한 높은 <u>대외의존도 및 개방도</u> 등으로 인해 환율변동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 이러한 점에서 외환당국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u>시</u> <u>장원리를 중시해 나가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외부충격 등에 따른 시장불안으로 환</u> 율이 급등락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환율정책의 수단

#### • 외환시장 개입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화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

→ 즉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당국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내 통화

량과 외화자산의 상대적 규모를 변화시키거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환율수준이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 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시장 불안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한해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하고 있다. → 시장개입을 위한 원화재원으로는 본원통화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자금이 있으며 외화재원은 한국은행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외환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 자금이 있다.

포트폴리오 밸런스 효과(portfolio balance effect) 환율결정이론의 하나인 포트폴리오 밸런스 접근법에 의하면 환율은 해외자산의 순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외환시장개입은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이 불완전대체재(imperfect substitutability)인 경우 환율변동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입하는 경우시장에 원화공급이 늘어나면서 원화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증가시켜 결국 원화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신호효과(signaling effect) 신호효과란 중앙은행이 시장개입을 통 해 시장참가자들에게 향후 통화정책 방 향에 관한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함으로 써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환율정책의 수단

•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credit crunch) 등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 조달에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외환당국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외자가 급격히 유출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 환율정책의 수단

• 외화유출입 조절

외환시장 또는 외화자금시장이 극도로 불안할 경우 외환당국이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직접 규제하여 환율안정을 도모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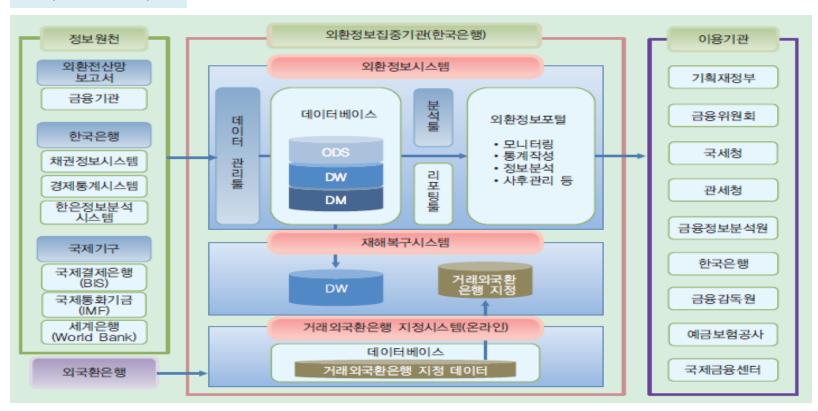
#### 정책경로로서의 환율

- 2013년 5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암시하자 일부 신흥국들이 환율급등, 자본유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겪었다. 'Taper Tantrum'으로 불리는 이 사례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과금리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처럼 중앙은행은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책금리 조정을 바탕으로 환율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러한 정책효과 전달 과정을 통화정책의 환율경로라고 지칭하는데 동 경로의 효과는 크게 국내금리의 변화가 환율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변화된 환율이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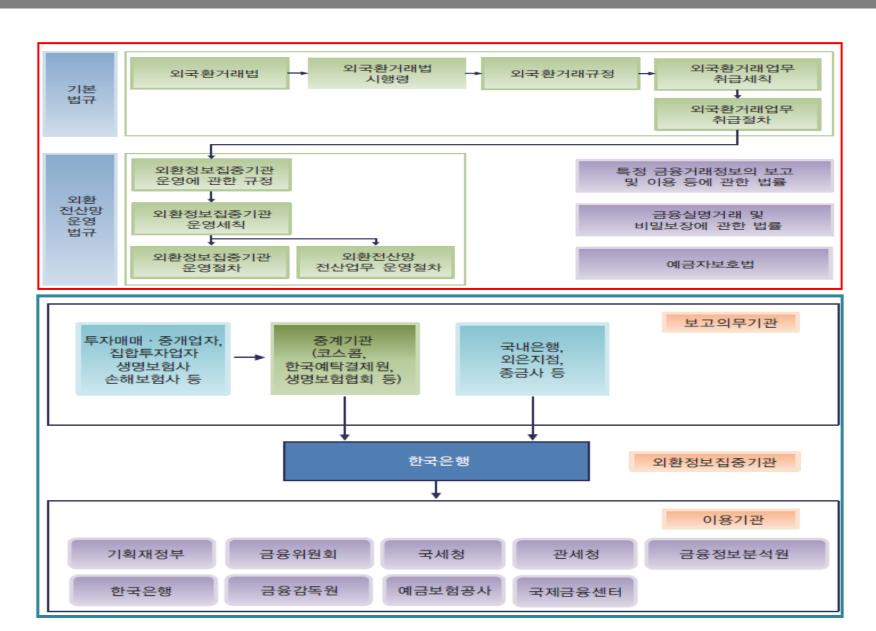
##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간의 연계성 심화, 대외개방도 확대에 따른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외환전산망에 2015년 1월부터 신외환전산망 (FEIS 2.0)을 가동
- 신외환전산망은 첨단 IT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손쉽게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외환거 래 정보 외에도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각종 금융통계와 국제금융시장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해복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 신외환전산망 구조



## 외환전산망 관련 법규 체계.참가기관



## 외화유동성비율제도

## 3개월 외화유동 성비율

● <u>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u> ≥ 85%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

## 만기불일치 비율

• <u>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u> ≥ 10% 이내(1개월) 총 외화자산

과거 1년내	3개월	갭비율					
위반 횟수	외화유동성비율	7일	1개월				
1호	II.C	o 나 미 다서게하다 ᅰ	大*				
2호	^「市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제출*					
비율상향 적용 <b>3회</b>		사유서 및 비율상향 적					
3-1	(85%이상) 달성계획서 징구 (△5%이상)						
4회 이상	일정 비율 충족할 때까지						
44 46	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차입정지						

## 외환포지션 관리제도

- 우리나라의「외국환거래규정」에서도 은행경영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이 외환포지션을 매입초과(over-bought position) 또는 매도초과(over-sold position) 상태로 노출(open)시킬 수 있는 규모제한
-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스퀘어포지션(square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환포지션 구분)

- •현물환포지션(현물자산-현물부채),
- •외환파생상품포지션(외환파생상품자산-외환파생상품부채),
- •종합포지션: 현물환포지션 + 외환파생상품포지션

## 외환포지션 관리제도

#### 포지션 산정방식

- 매영업일 잔액기준 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
  - 매입초과포지션(O/B): 매입액 > 매도액
  - 매각초과포지션(O/S): 매입액 < 매도액
- 종합포지션: 간편포지션 방식, 선물환포지션: 순합산포지션 방식



•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보고대상

• 금융감독원(한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

보고주기

- 일별 포지션 상황을 <mark>매월</mark> 보고(익월 말까지)
- 위반시 3영업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

## 외환포지션 한도 제도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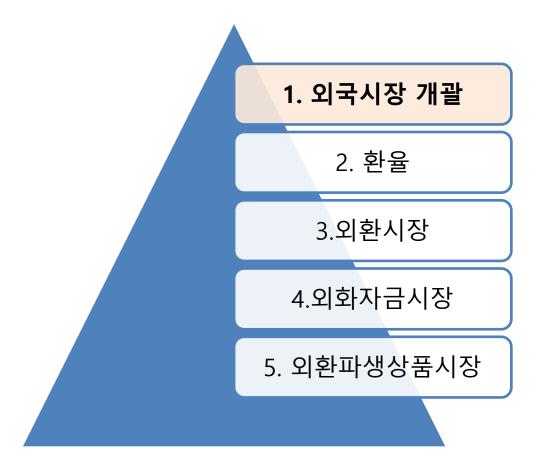
## 외국환포지션 위반 조치

구 분	조 치
· 과거 1년간 1회 위반	주의
ㆍ 과거 1년간 2회이상 위반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감축
·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 · 고의위반 · 3영업일 이내 위반사실 미보고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의 2배를 한도위반일수만큼 감축
· 허위보고, 미보고	주의, 시정명령, 한도감축

# Domain Knowledge(5) 외환이해

- 1. 외환거래법 개괄 소개 2. 외환시장 이해

# 2. 외환시장 이해



## 외환시장 의의.역할

- 환(換)이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간의 현금을 보내는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3자인
   은행 등을 이용하여 지급위탁 방식으로 결제하는 수단
- 외국환이란 국제간 채권과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 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 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을 말하며 외화증권 및 외화파 생상품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및 파생상품을,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債權)을 의미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

또한 외환시장은 이종통화간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foreign currencymoney market)46)과는 구별되나 넓은 의미로는 외환시장에 외화자금시장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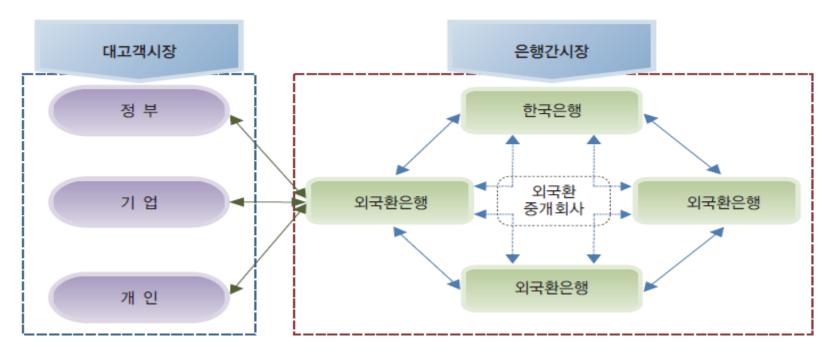
- 1.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
- 2.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
- 3.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
- 4.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회피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외환시장 구조 : 외환시장 참가자

- 외환시장에는 기업이나 개인 등 고객, 외국환은행, 외환중개인 및 중앙은행 등이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참가
- 고객: 수출입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해외여행을 하는 개인 등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자
- 외국환은행: 외환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고객과의 외환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고객거래 결과 발생하는 은행 자신의 외환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 변동을 은행간시장을 통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외환거래 참여
- 대형은행의 경우 외환시장에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특정 통화에 대한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동시에 제시(two-way quote)하면서 24시간 외환매매 참여
   → 이들이 제시하는 매도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는 은행들의 수입원이 되는 동시에 외환시장내 가격 결정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
- 외환중개인(foreign exchange broker): 중개수수료를 받고 은행간거래를 중개해주는 자
- 외환매매 거래를 하는 은행들은 전 세계 외환시장에 시시각각으로 형성되는 최적의 매도 및 매수 가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한 은행이 특정 거래상대방과 직접거래를 할 경우 자기 은행의 포지션이 거래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
- 따라서 은행들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외환매매 거래를 하게 된다. 외환중개인은 은행들이 제시하는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을 다른 은행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중개 업무만을 하고 외환거래를 직접 행하지 않기 때문에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중개에 따른 수수료 수입 만을 얻는다는 점에서 은행과 상이하다.

외환중개인의 경유 여부와 상관없이 외환거래를 거래소(exchanges)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장외거래(OTC;over-the-counter)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환거래는 통화선물거래, 통화옵션거래(KRX 거래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외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 외환시장 구조 : 외환시장의 구분



외국환은행은 국내은행 17개 기관(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등 은행간 현물환시장에 참여

#### 은행간시장

외국환은행 딜러간에 직접 거래하는 시장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시장으로 구분

## 외환시장 구조 : 외환시장의 구분

####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 자금중개, IPS 외국환중개 외국계 회사로는 ICAP, Tullett Prebon, BGC, Nittan Capital, GFI, Tradition

외국환중개회사는 2002년 10월부터 기존 방식인 전화주문과 함께 전자중개시스템(EBS; Electronic Brokering System)을 통해서도 거래주문을 접수하고 있다. 전자중개시스템은 외국환은행의 딜러가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주문을 입력하면 중

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외환거래 방식

#### 은행간 직거래

주로 로이터(Reuters) 단말기의 딜링 머신 등을 통해 딜러간 가격 및 거래조건이 결정

#### 은행간거래 주요 내용 (09:00~15:30)

	원/달러 거래	원/위안 거래			
거래종류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거래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거래			
거래단위	100만달러 단위(100만달러 이상)	100만위안 단위(100만위안 이상)			
호가방법	1달러에 대한 원화가격을 10전 단위로 호가	1위안에 대한 원화가격을 1전 단위로 호가			
거래체결	전화 및 전자주문방식에 의한 매매주문을 전산으로 자동체결				

## 외환시장 구조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 외환시장 참여기관의 자율운영기구로서 외환시장의 건전한 육성및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1989년 12월 발족
- 동 협의회는 현재 시중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중개회사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4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시장선진화 전문위원회,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외환파생상품 전문위원회,원/위안 전문위원회)와 1개의 비상설 위원회(외환거래 중재위원회)가 설치
- 이들 전문위원회에서는 외환거래에 관한 의견조정 및 지침 제정, 외환시장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 외환거래 지침위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자율규제 등의 역할을 수행

외환거래와 관련한 사고예방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2월「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The Seoul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를 위해 노력

#### 외환시장 거래 규모: BOK

#### 은행간 외환거래1) 규모2)3)

(기간중 일평균, 억달러)

	19년	20년	20.3/4	4/4	21.1/4 <sup>p</sup>	1월	2월	3월 <sup>p</sup>
현 물 환	92.2	97.3	100.1	92.9	109.2 (+16.3)	111.9	106.8	108.8
(원/달러)	69.1	74.9	73.8	70.8	90.2 (+19.5)	92.1	90.0	88.8
(원/위안)	23.1	22.4	26.3	22.2	19.0 (-3.2)	19.8	16.7	20.1
선 물 환	6.2	6.0	6.3	7.5	6.4 (-1.1)	7.1	5.8	6.3
외환스왑	138.6	129.9	120.9	125.3	143.5 (+18.2)	143.5	140.8	145.8
기타파생상품4)	25.1	24.4	24.3	20.7	24.7 (+4.0)	22.7	25.5	25.9
합 계	262.2	257.6	251.6	246.4	283.9 (+37.4)	285.2	278.8	286.8

주 : 1) 외국환 중개회사 경유 거래

2) p는 잠정치 3) ( )내는 전분기 대비 증감액

4) 통화스왑 및 옵션 등

#### 비거주자의 NDF 거래규모<sup>1)2)</sup>

(일평균, 억달러)

19년	20년	20.3/4	4/4	21.1/4 <sup>p</sup>	1-92	2월	3- <b>₽</b> ₽
107.9	91.2	76.1	78.6	102.9	99.5	105.0	104.4

주 : 1)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NDF매입 및 매도 거래 합계 기준(ND Swap 포함) p는 잠정치

#### 외환보유액 추이

(억달러, %) 2021.5월말 전월비 증감 2021.4월 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b) (b-a) (a) 3,892.7 4,088.2 외환보유액 4,036.9 4,431.0 4,523.1 4,564.6 (100.0) 41.5 19.8 유가증권1) 3,588.3 3,796.0 3,850.2 4,098.4 4,120.7 4,140.5 (90.7)예 치 금 206.5 137.3 128.5 202.8 272.2 294.4 22.1 (6.4)S D R 33.7 34.3 33.5 33.7 35.3 35.4 (0.8)0.2 IMF포지션<sup>2)</sup> 27.9 46.9 (1.0)16.2 21.4 48.2 46.4 -0.647.9 47.9 47.9 47.9 47.9 47.9 0.0 (1.1)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통화증권(MBS, 커버드본드 2)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에 대한 교환성통화 인줄권리

## 외환시장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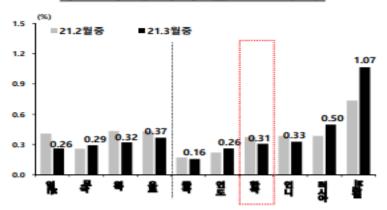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변동성

(기간중 평균, 원, %)

			7172 0	-0 KT *	12, 70)
		20.4/4	21.1/4	2월	3월
■ 전일 대비	변 <del>동폭</del>	3.7	3.8	4.1	3.5
	변 <del>동률</del>	0.33	0.34	0.37	0.31
■ 기간 표준		21.5	15.3	6.8	5.2

자료: ECOS

#### <u>주요국 통화의 환율 변동성1)</u>



주: 1) 전일대비 변동률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 원/달러 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기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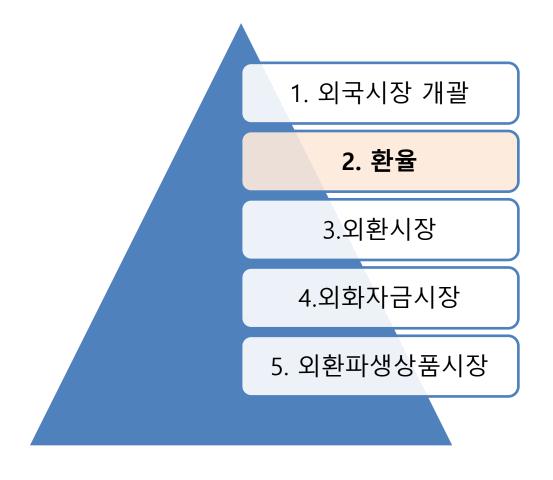
	19년	20년	21.2월(A)	3.16일	3월	4.7일(B)	В-А(%р)
<ul><li>● 원/달러 스왑레이트(3개월)</li><li>● 통화스왑금리(3년)</li></ul>	-0.92	-0.04	-0.11	-0.21	0.00	-0.02	+0.09
■ 통화스왑금리(3년)	0.72	0.31	0.16	0.34	0.39	0.47	+0.31

자료: 한국자금중개, Tullett Prebon

## 외환시장 구조 : 외환거래 종류

- 외환거래는 상품
- 현물환거래
- 선물환거래
- 선물거래
- 외환스왑거래 (Fx swap)
- 통화스왑거래(CRS)
- 통화옵션거래 등

# 2. 외환시장 이해



## 환율의 의의 및 종류

- 환율(exchange rate)이란?
-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간 교환비율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즉 외국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 자국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하 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통화의 가격을 의미
- ●USD/KRW: 기준통화 USD, 1,000원→1,100원 (달러 강세 = 원화 약세)
- ●USD/JPY: 기준통화 USD, 90엔→100엔 (달러 강세 = 엔화 약세)
- ●GBP/USD: 기준통화 GBP, 1.500달러→1.550달러 (파운드 강세 = 달러 약세)
- ●AUD/USD: 기준통화 AUD, 0.8500달러→0.9000달러 (AUD 강세 = 달러 약세)
- ●EUR/USD: 기준통화 EUR, 1.3000달러→1.4000달러 (유로 강세 = 달러 약세)

FC vs VC

### 자국통화표시법과 외국통화표시법

- 자국통화표시법 또는 직접표시법(direct quotation) : 환율을 외국통화 한 단위당 자국통화 단위수로 표시하는 경우
- 외국통화표시법 또는 간접표시법(indirect quotation) : 자국통화 한 단위당 외국통화 단위수로 표시하는 경우
- →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여 자국통화의 환율을 고시
- → 영국, 유로지역,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통화표시법을 사용

#### (매입환율과 매도환율)

two-way quote 방식 :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일반적으로 매입환율(bid rate 또는 buying rate)과 매도환율 (asked rate 또는 offered rate)이 동시에 고시

매도환율과 매입환율의 차이는 매매율차(bid-ask spread)라고 불리며 거래비용의 성격

- →매매율차는 거래통화의 유동성 상황이나 환율 전망,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적으로 매매율차는 거래빈도가 높은 국제통화간에는 작게 나타나며 대고객거래보다 은행간거래에서 더 작게 나타난다.

## (대고객환율과 은행간환율)

은행간 환율 : 통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 대고객환율: 은행간환율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고시 → 당일의 은행간 환율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실시간의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당일 중에 도 몇 차례에 걸쳐 대고객환율을 수정하여 재고시



## 교차환율과 재정환율

- 교차환율(cross rate)이란 ?
- 자국통화가 개재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 우리나라에서는 엔/달러 환율이나 달러/유로 환율 등이 교차환율에 해당.
- 재정환율(arbitrage rate)이란?
- 원/엔 환율이나 원/유로 환율과 같이 국내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계산할 때 원/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엔/달러 환율 또는 달러/유로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환율

##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이란 외환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통상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을 말한다. 반면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은 외환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경과 후 장래의 특정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을 말한다. 선물환율은 금리평가이론(covered interest rateparity)에 따라 두 통화간의 금리차와 일치하게 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해 이론값이 산출

F: 선물환율, S: 현물환율, (F-S)/S: 스왑레이트, i: 국내금리, i\*: 해외금리

#### 실질환율과 실효환율

-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을 반영한 환율로서 구매력평가이론(PPP; Purchasing Power Parity)68)에 근거하고 있다
- ◆ 여기서'실질'이라는 용어는'명목 가치를 물가상승률로 조정한'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유의

$$e = s \times \frac{p^*}{p}$$

e: 실질환율, s: 명목환율, p: 자국 물가수준, p\*: 외국 물가수준

- →실질환율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 → 가령 실질환율이 하락(자국통화의 절상)하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의미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면 원화 대비 엔화 가치 또한 하락하게 되어 일본 상품에 비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실효환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국통화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간의 환율을 무역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표

#### 실질환율과 실효환율

명목실효환율(NEER; 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교역상대국과의 명목환율을 무역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이며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Exchange Rate)은 명목실효환율에 본국과 교역상대국간의상대적인 물가수준 변화를반영한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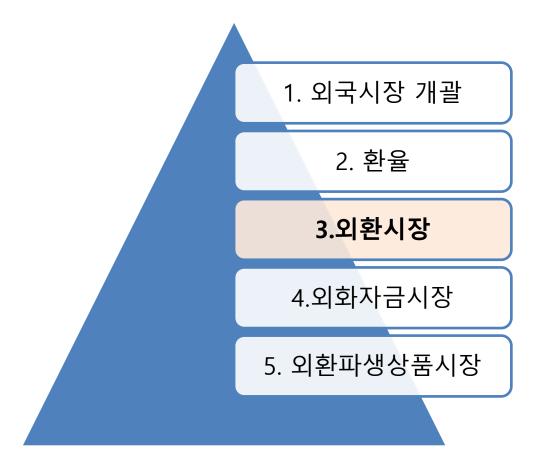
다만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은 명목환율의 절대적 수준이 통화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시점과의 비교를 통한 지수 형태로 산출된다

##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

→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기준시점보다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음을, 100 미만이면 기준 시점보다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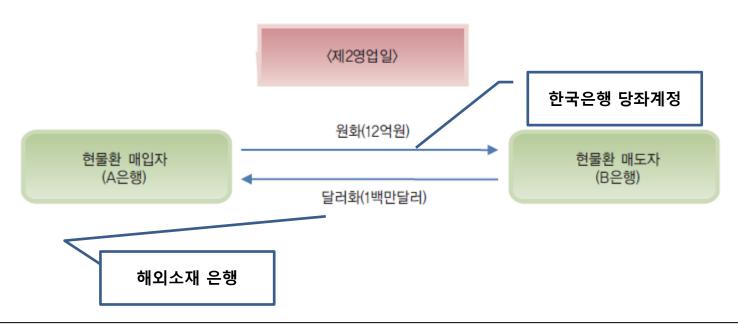
・실질실효환율지수 
$$=$$
 명목실효환율지수  $\times$  100  $=$  대학평가지수  $\times$  100  $=$  대학평가지수  $=$  대학평가지수 대학평가  $=$  대학평가지수  $=$  대학평가  $=$  대학평가지수  $=$  대학제  $=$  대학평가지수  $=$  대학제  $=$  대학제  $=$  대학제  $=$  대학제  $=$ 

# 2. 외환시장 이해



# 환율환(Spot)시장

- 현물환거래란 통상 외환거래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계약일(transaction date)은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 만기,계약 통화 등 거래조건이 결정되는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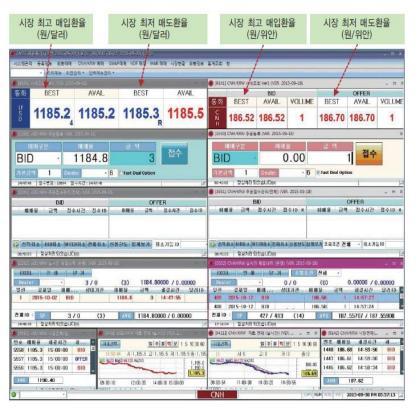
#### 현물환의 거래동기

→ 실수요 매매, 투기적(speculative) 및 환리스크 관리 (hedging) 목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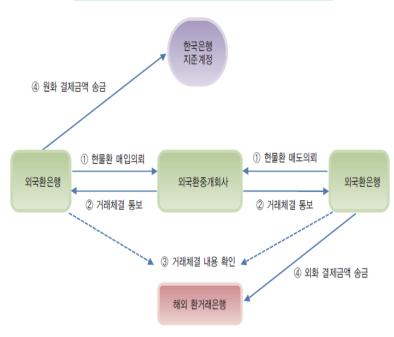
# 환율환(Spot)시장 거래 메커니즘

#### 현물환시장: 은행간시장 및 대고객시장 구분

은행간시장에서는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한 거래가 일반적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중개회사에 전화 또는 전자중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 > 외국환중개회사는 이들 중 최고 매입환율(best bid rate)과 최저 매도환율(best offer rate)을 참가 금융기관의 컴퓨터 스크린에 제시



## 은행간시장의 외환거래 절차



계좌는 원화의 경우 한국은행 지준계좌(BOK-Wire)를 통해서, 외화는 주로 해외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주로 뉴욕 소재) 계좌를 통하여 결제

직전 체결환율이 1,180원으로 체결된 상황에서 한 딜러가 브로커에게'30 bid 100'이라고 주문을 내면 이는 1달러당 1,180.30원에 100만달러를 매입하겠다는 주문을 의미

다른딜러가'50 offer 200'이라고 하면 1달러당 1.180.50원에 200만달러를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의미

## 환율환(Spot)시장 거래 메커니즘

## 은행간시장에서의 현물환거래 결제일 변천

1994년 10월 이전 당일결제(value today) 방식으로만 거래 1994년 11월 익영업일결제(value tomorrow) 방식 추가 1996년 2월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 방식 추가 2002년 8월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 방식으로 통일\*

현재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익익영업일결제 방식으로만 현물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은행간 직접거래 또는 은행과 대고객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일결제 또는 익영업일결제로 거래되기도 한다.

#### (외환거래의 결제 영업일 산정)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신용위험(credit risk)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자에 상호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국이 상이하고 각 국가의 영업일 또는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 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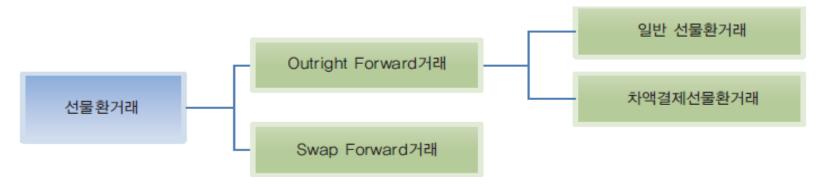
→예를 들면 원/달러 현물환거래 계약시 일반적으로 외화는 미국 소재 은행에서, 원화는 우리나라에서 결제되므로 양 국가의 휴일을 감안하여 결제일을 변경한다.

→ 즉 원/달러 현물환거래를 계약한 이후 결제일 이전에 우리나라의 휴일이 있을 경우 영업일에서 제외하는 반면 미국 휴일은 영업일로 산입한다.

#### 일반 선물환시장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 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

## 선물환거래의 종류



## Outright Forward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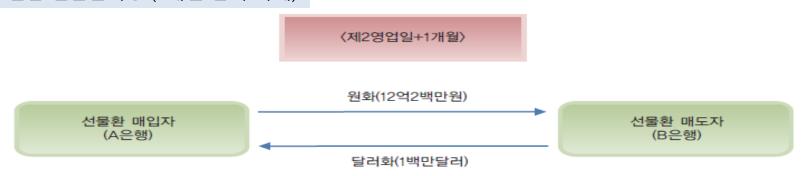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 (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구분

## 외환스왑(FX Swap)시장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상대방간에 현물환과 선물환(Spot-Forward Swap)또는 만기가 상이한 선물환과 선물환(Forward-Forward Swap), 현물환과 현물환(Spot-Spot Swap 또는 Backward Swap)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

## 일반 선물환시장 (1개월 만기 사례)



## 선물환 거래동기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획득 또는 투기적 목적 등

## 통화선물(환) 헤지 전략

구 분	위험	헤지포지션	비고
수출업자 (long position)	환율 하락위험	통화선물(환) 매도포지션	매도헤지(short hedge)
수입업자 (short position)	환율 상승위험	통화선물(환) 매입포지션	매입헤지(long hedge)

#### 선물환 거래동기

선물환거래를 통한 금리차익(arbitrage) 거래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 목적으로도 이용금리평가이론(covered interest rate parity)에 따라 선물환율이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양 통화의 금리차에 의해 결정 →따라서 스왑레이트가 양 통화간 금리차와 괴리될 경우 금리차익거래를 통해 환리스크 없이 이익을 획득

#### (사례)

현재 현물환율이 1,190.0원, 3개월 선물환율이 1,193.4원, 우리나라의 통안증권(91일물) 금리가 연 1.55%, Libor(3개월물)가 연 0.30%일 경우 스왑레이트는 연 1.14%(=(1,193.4-1,190.0)/1,190.0×4×100)로 내외금리차 연 1.25%를 하회하므로 다음과 같은 거래로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론선물환율(1,193.71) > 시장선물환율 (1,193.4)

- → 선물환매입+ 현물환 매도(추가적 거래: 달러현물 차입 + 원화예치)
- ① 달러화 차입(차입금리: 0.30%)
- ② 차입한 달러화를 현물환시장에서 매도하고 선물환을 매입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으므로 스왑레이트(1.14%)만큼 비용 발생)
- ③ 현물환 매도를 통해 조달한 원화자금을 통안증권으로 운용(운용수익: 1.55%)
- ④ 선물환계약 만기시점에 인수한 달러화로 차입금 상환
- → 운용수익 1.55% (0.3%-1.14%) = 0.11%(차익)

## 선물환(Forwards)시장 거래 메커니즘

#### 거래주문시 제시가격

 절대 환율수준이 아니라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왑포인트(swap point)로 호가 하며 거래가 체결되면 직전 체결된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환율이 결정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

예를 들어 1개월 선물환거래가 3.0원에 체결되었다면 선물환율은 직전에 체결 된 현물환율(1,200원으로 가정)에 3.0원을 가산한 1,203원으로 결정

## 선물환거래 결제일 종류

2영업일을 초과한 1주일, 1개월, 1년 등 표준적인 날을 결제일로 하는 표준결제일(fixed date) 방식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주·월·년 단위가 아닌 특정일을 결제일로 정하는 비표준결제일(odd date) 방식

### 선물환거래 결제일

- •현물환 결제일(spot date)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여기에 선물환기간을 더하여 해당월의 같은 날짜로 결정
- •결제일이 휴일인 관계로 익영업일인 로 순연된다.
- •단, 선물환거래 결제는 현물환거래와는 다르게 월을 바꾸지 못하는 원칙 및 끝날거래(end to end)의 원칙이 추가 적용

##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시장

-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없이 약정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액만큼만 거래 당사자간에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
- 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결제위험이 작고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크다는 특징

NDF의 결제통화가 주로 미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일지라도 비거주자가 해당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원화와 미달러화간 NDF는 1996년 홍콩, 싱가포르 등 역외시장에서 Prebon Yamane사를 비롯한 일부 중개회사를 중심으로 비거주자간에 거래가 시작

1999년 4월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의 NDF거래가 허용된 이후 역외 NDF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NDF의 거래동기도 일반 선물환거래와 마찬가지로 환리스크 관리85), 투기적 또는 차익거래 목적

##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시장 거래 메커니즘

- NDF거래 메커니즘은 가격고시방법, 결제일 결정방법 등 기본거래 조건 등에서 일반선물환거래와 동일하다.
- 다만 일반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현물을 인수도하지 않고 계약환율과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 액만을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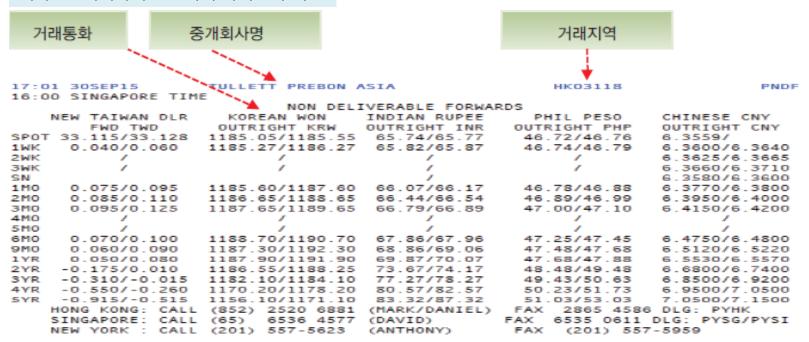
### NDF거래(예시)

국내 외국환은행이 1,200원/달러의 계약환율로 1개월 후에 비거주자에게 1백만달러를 매도하는 NDF계약을 체결→ 지정환율이 1,300원이 된 경우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시장

외국환중개회사의 NDF거래 가격고시 내용



비거주자간의 원/달러 NDF거래는 싱가포르, 홍콩, 런던, 뉴욕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는데

#### 특히 뉴욕시장의 경우 미국 증시 및 엔/달러 환율변동 등 추가적인 시장정보가 반영

→ 따라서 전일 뉴욕시장의 원/달러 NDF거래 종가(終價)는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현물환율 시가 (始價)를 결정하는 데 영향 : 전일 변동폭+ 스왑포인트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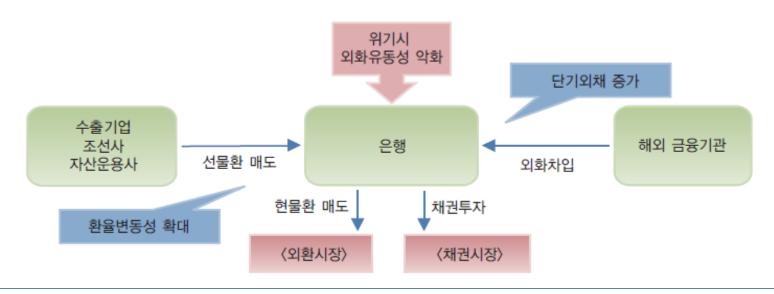
NDF거래와 원/달러 환율간의 관계

(비거주자가 원/달러 NDF를 매입한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은 NDF를 매도하는 것이므로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상태가 되어 환위험에 노출된다. → 이를 헤지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은 외환시장에서 현물환을 매입함으로써 종합포지션을 스퀘어(square) 상태로 만들며 → 현물환에 대한 매입수요가 증가하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압력

반면 NDF거래 만기시에 차액을 정산하면 NDF거래금액 만큼 국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이 소멸되므로이에 따른 매입초과포지션을 해소하기 위해 현물환을 매도(Fixing으로 통칭)87)하게 된다. 따라서 NDF거래 계약시와는 반대로 외환시장에 공급요인이 발생하여 원/달러환율의 하락압력 요인 작용

#### 선물환 매도에 따른 단기외채 증가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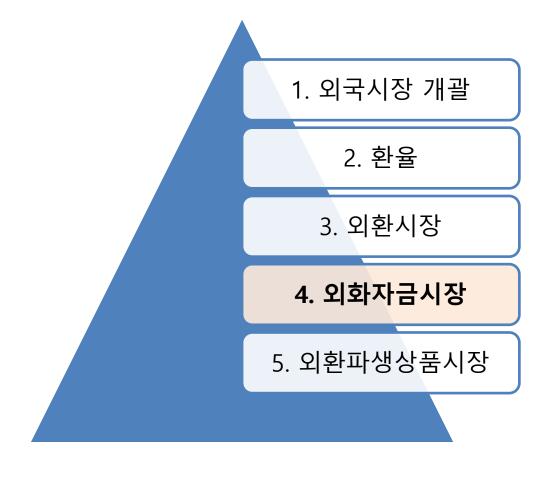


#### (사례)

국내 조선·중공업체, 자산운용사 등은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이나 해외투자 회수자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선물환 매도)한다. 반면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장래에 외화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외화를 받아 차입금을 상환한다.

실제 이러한 거래는 2006~2007년 우리나라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2. 외환시장 이해



- 외화자금시장은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대표적인 외화자금시장으로는 스왑(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시장이 있다.
- 스왑거래의 경우 외환의 매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매개로 하여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한다는 점에서 대차거래라고 볼 수 있다.
- 이 외에도 은행간 초단기로 외화의 차입 및 대여가 이루어지는 외화콜시장과 1년물 이내의 기간물 대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대차시장 등이 외화자금시장의 범주에 속한다.

## 외환스왑(FX Swap)거래

거래당사자들이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 ①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Spot forward swap)
  - ·현물환 매입 + 선물환 매도 : USD buy & sell swap against KRW
  - ·현물환 매도 + 선물환 매입 : USD sell & buy swap against KRW
- ②선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forward forward swap)
   1개월 선물환거래 매수(매도) + 3개월 선물환거래 매도(매수)
- ③현물환거래와 현물환거래(Spot spot swap)
  - O/N swap : Value today 매수(매도) + Value tomorrow 매도(매수)
  - T/N swap: Value tomorrow 매수(매도) + Value spot 매도(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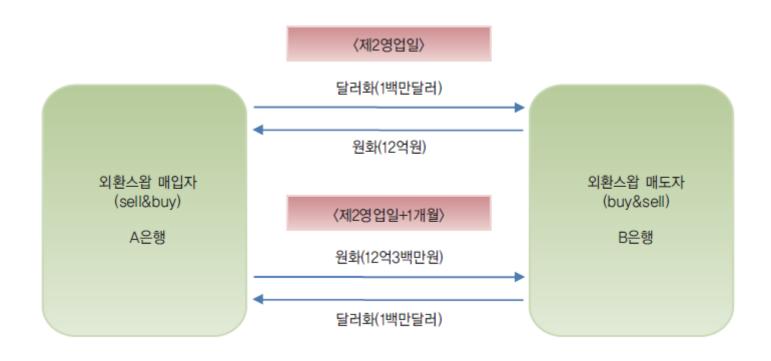
#### 외환스왑시장 가격변수

외환스왑시장의 가격변수인 스왑레이트(swap rate)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 -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금리평가이론(covered interest rate parity)에 따라 양 통화간 금리차와 일치하게된다.

이러한 스왑레이트는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대용지표(proxy)로도 활용

## 외환스왑(FX Swap) 거래예시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 1개월 선물환율 1,203원 조건으로 1백만달러를 현물환매도/선물환매입 (sell&buy)의 외환스왑거래 체결



## 외환스왑(FX Swap) 거래 동기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

1. 자금조달 목적의 외환스왑거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빌려주는 대가로 필요한 통화를 조달함으로써 통화간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래

2. 환리스크를 관리 목적

수출자금 유입과 수입대금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각 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보다 자금의 공급시점 및 수요시점을 예상하여 결제시점의 차이 동안 외환스왑거래를 하면 보다 용이하게 환리스크를 헤지 가능

3. 외환스왑거래는 현재의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환리스크 없이 초과수익을 얻기 위한 금리차익 획득 목적

## 외환스왑거래(예시)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기업은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수출 네고자금과 수입 결제자금의 흐름을일치시킴으로써 환리스크를 헤지

- 2020년 6월 3일 현재 A기업은 1개월 후 수출 네고자금으로 1억달러가 유입되고 2개월 후수입대금 1억달러를 결제해야 할 경우 sell&buy(선물환(1개월)매도/선물환(2개월)매입) 스왑거래를 이용하여 자금흐름 시기를 일치.

6월 3일	sell&buy(1개월×2개월)스왑 1억달러 계약 · 현물환율 : 1,200원 · 1개월 선물환율 : 1,203원 2개월 선물환율 : 1,206원		
7월 3일	수출 네고지금 1억달러를 계약시점에서 정한 1,203원에 매도		
8월 3일	수입 결제자금 1억달러를 계약시점에서 정한 1,206원에 매입		

#### 거래 메커니즘

은행간 외환스왑시장에서의 거래 메커니즘 은 참가자, 거래단위, 거래시간 등 기본조건에 있어 현물환 및 선물환 거래와 동일

1. 가격 표시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스왑포인트(선물환율-현물환율)로 호가하며 거래가 체결되면 직전 체결된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선물환율을 산출한다.

→현재 현물환율이 1,180원인 경우 한 딜러가'FX one month 275/280'이라고 주문을 냈다면 이는 1,180원에 2.75원을 가산한 1,182.75원에 외환스왑을 매입(sell&buy)하고 1,180원에 2.80원을 가산한 1,182.80원에 외환스왑을 매도(buy&sell)하겠다는 것을 의미

**→**2. 결제일자

외환스왑은 현물환/현물환, 현물환/선물환 및 선물환/선물환의 거래가 가능하므로 결제일자는 현물환의 경우 현물환 결제일자, 선물환은 선물환 결제일자의 결정방법을 따른다.

(우리나라 은행간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스왑 기일물의 종류)

Overnight(O/N), Tomorrow Next(T/N), Spot Next(S/N), 주, 월, 년 등의 표준결제일 방식과 비표준결 제일 (odd date) 방식이 있으며 이 중 O/N 등 단기물 외환스왑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고객시장에서의 외환스왑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은행간에는 기업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스왑거래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거래

구 분	외환스왑	통화스왑	
연금호들		초기와 만기에 원금 교환, 중간에 이자교환(O)	
적용환율	초기 : 현물환율, 만기 : 선물환율	초기와 만기 : 초기 환율 적용	
계약기간 일반적으로 단기계약 일반적으로 장기계		일반적으로 장기계약	

- 통화스왑이란
- :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의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 하는 거래
- •통화스왑도 자금대차거래라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스왑기간에 차이가 있다.
-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
-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

#### 통화스왑거래(예시)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달러화 1천만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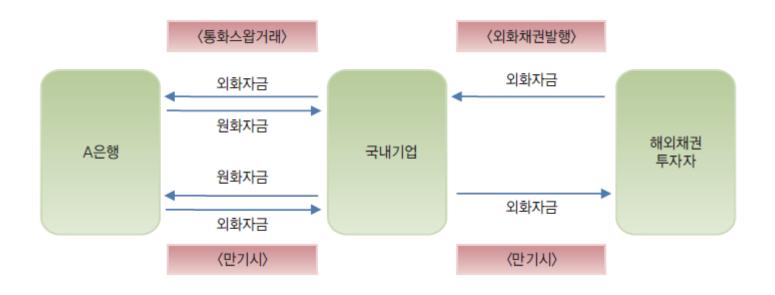
## 통화스왑 거래동기

장기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

(환리스크 관리 목적의 통화스왑거래)

특정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표시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한 국내기업의 경우 달러자금을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자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외화채권 만기시 통화스왑거래에서 상환받은 외화로 외화채무를 상환함으로써 환위험을 해지

## 환리스크 관리 목적의 통화스왑거래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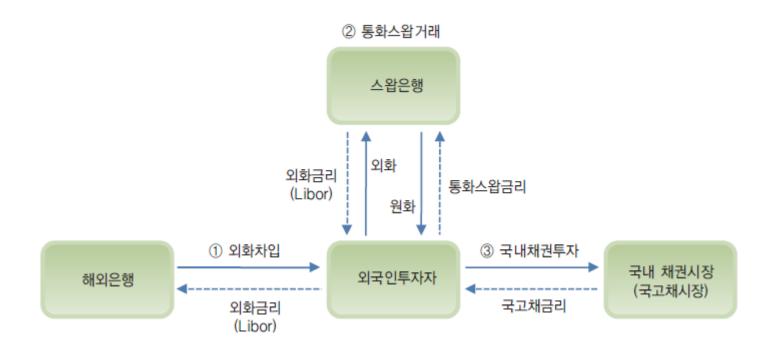


## 통화스왑 거래동기

장기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

## 금리차익 목적의 통화스왑거래 메커니즘

통화스왑금리(Libor와 교환되는 원화고정금리)와 원화채권수익률 또는 외화채권수익률이 차이가 날 때 이루어진다. 즉 특정 통화로 자금을 조달→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다른 통화로 전환한 후 채권에 투자→ 차익을 획득하는 경우



#### 통화스왑 거래동기

장기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

통화스왑거래를 통한 금리차익거래(예시)

2020년 9월말 현물환율 1,200.0원, 국고채수익률(3년물) 연 1.62%, 통화스왑금리(3년물) 연1.03%일 경우 다음과 같은 거래를 통해 재정차익을 획득

- ① 국제금융시장에서 미달러화 차입
- ② 은행과 만기 3년의 통화스왑(CRS Pay)계약을 맺어 미달러화를 원화로 교환
- ③ 통화스왑거래로 조달한 원화로 국고채 매입
- ④ 계약기간 중 국고채 투자로부터 연 1.62%의 이자를 수취하여 스왑계약을 맺은 은행에 연 1.03%의 통화스왑금리 지급
- ⑤ 스왑계약을 맺은 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Libor)를 수취하여 차입금 이자로 지급
- ⑥ 만기에 보유채권을 상환받아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스왑은행에 원화를 지급하고 미달러화를 받아 차입금 상환

⇒ 1.62% - 1.03% = 0.59% (국고채금리) (통화스왑금리) (재정차익)

즉 국고채금리가 통화스왑금리를 상회하면「① 외화 차입 → ② 통화스왑으로 원화 조달 → ③ 원화 운용」으로 차익을 얻게 된다.

#### 거래 메커니즘

통화스왑은 당사자간의 직접거래 또는 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 방식

•직접거래

해외채권 발행 등을 통한 외화조달이 많은 공기업, 카드회사나 보유 중 인 원화자금을 외화채권으로 운용하는 보험사90) 등과 국내은행 또는 대형 외은지점간에 주로 일어나고 있다.

•중개거래

직접거래의 결과 발생한 포지션을 스왑은행간 조정하거나 보유자산의 헤지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흔히 이용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통화스왑은 주로 원화고정금리와 미달러화 변동금리(6개월 Libor)가 교환되는 Cross Currency Swap 방식으로 거래

원/달러 통화스왑금리는 지급 또는 수취할 원화 고정금리로 표시되는데 원화 고정금리 수취(receive-fixed)를 offer side로, 원화 고정금리 지급(payfixed)은 bid side로 고시하고 있으며 거래호가는 주로 1bp 단위로 제시

## 외국환중개회사의 통화스왑거래 가격고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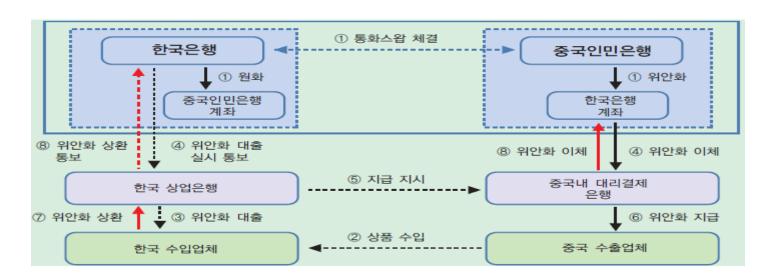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중앙은행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미국, 일본, 중국 및 신흥국 중앙 은행들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거나 스왑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유사시 단기유동성 지원, 무역 촉진,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

## 미국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미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중국인민은행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중 통화스왑자금 중 일부를 양국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실시



## 외화콜시장

- 외화콜이란 은행간에 외화를 초단기로 대차하는 거래로, 통상 90일 이내의 외화대차거래를 의미
- 외화콜을 대여하는 것을 외화콜론이라 하며 차입하는 것은 외화콜머니라 부른다.
- 은행들은 수출입대금 결제, 외화대출 등의 대고객거래와 외환매매, 외화증권 발행·상환 등의 결과 일시적으로 외화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외화콜시장에 참가
- 이에 따라 외화콜거래는 주로 개별은행의 외화차입여건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사정에 따라 거래규모가 좌우

## 거래구조

- •외화콜거래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와 외국환은행 당사자간의 직접거래로 구분
- •거래기 일물의 종류는 Overnight(O/N), Tomorrow Next(T/N), SpotNext(S/N), Week, Month 등이 있으며 Overnight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통화는 미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 등
- •주로 거래라인이 있는 은행간 Reuter 딜링머신을 이용해 거래의향을 전달하고 금리 등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

## 장내 외화콜거래 절차



# 외화콜시장

## 외화콜시장과 원화콜시장 비교

	외화콜시장	원화콜시장	
만기	제한없음(통상 90일 이내)	최장 90일 이내	
수급요인	외화자금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음 지준적립기간에 크게 영향을 받음		
거래통화	USD, JPY, GBP, EUR 등	PY, GBP, EUR 등 KRW	
종류(담보제공 여부)	신용콜 및 신용콜(신용콜이 일반적		
참가기관	외국환은행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중개방식	중개기관은 계약체결에 앞서 콜론기관의 콜머니기관에 대한 신용한도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를 연결하여 금리를 확정		
지금결제	외국 코레스은행을 통한 자금이체	BOK-Wire	

# 2. 외환시장 이해

1. 외국시장 개괄

2. 환율

3. 외환시장

4. 외화자금시장

5. 외환파생상품시장

• 통화선물거래란 거래소(exchanges)에 상장되어 있는 특정통화에 대하여 시장참가자 간의 호가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선물환율로 일정기간 후에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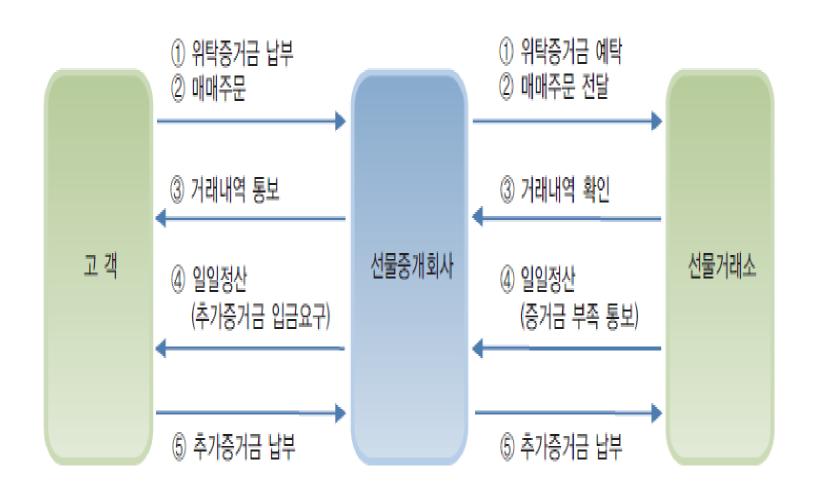
<del>1971 8 15</del>

통화선물은 1972년 5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국제통화시장(IMM; International Monetary Market)이라는 부설시장에서 최초로 거래가 시작되었다통화선물거래는 계약시에 약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특정통화를 매입·매도한다는 점에서 선물환거래

## 통화선물과 선물환의 비교

	통 화 선 물	선 물 환
거래장소	거래소(exchange)	장외(over-the-counter)
거래조건	표준화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맞춤
거래방법	다수 거래당사자간의 공개호가 또는 전산거래	거래당사자들간의 직접거래
신용관리	청산소가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약이 행을 보증	계약이행을 전적으로 매매쌍방의 신용에 의존하므로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장참가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선물환거래가 어려운 개인 또는 기업도 참가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또는 기업
결제	대부분 만기 전에 반대매매에 의해 포지션을 청산	대부분 만기시 실물인수도에 의해 결제

## 통화선물거래 절차



## 통화선물거래 손익구조

	시장(선물)환율 〉계약환율	시장(선물)환율 〈 계약환율		
매입자	이익 : 시장환율 – 계약환율	손실 : 계약환율 – 시장환율		
매도자	손실 : 시장환율 – 계약환율	이익 : 계약환율 – 시장환율		
(	통화선물 매입시〉	〈통화선물 매도시〉		
이익(+) 🛧	이익	(+) <b>^</b>		
손실(-) •	시장환율 계약환율 소실	시장환율		

구 분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엔선물	위안선물	
계약단위	\$10,000	EUR10,000	JPY1,000,000	CNH ¥100,000	
결제월주기	분기월 중 4개와 그 밖으	분기월 중 4개와 그 밖의 월 중 4개			
상장결제월	1년 이내의 8개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원(\$1당)	원(1EUR)	원(100JPY)	CNH ¥1당 원화	
최소가격변동폭	0.1원[1틱(Tick)의 가치 = 1,000]			0.01원	
일일가격제한폭	설정하지 않음				
포지션한도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정할 수 있음				
거래시간	·평일 : 09:00~15:45(점심시간 없이 연속거래) ·최종거래일 : 09:00~11:30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 이후 2영업일				
최종결제방법	실물인수도(physical delivery settlement) ·최종결제일에 해당 기초자산 외국통화와 원화를 교환함				

## 통화선물거래(예시)

수출업체 A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미달러화의 환율하락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미달러선물(11월 만기물) 100계약(100만달러)을 매도하였다.

① 2020년 10월 1일 : 미달러선물 매도(현물환율 : 1,176.3원, 계약환율 : 1,178.3원)

② 2020년 10월 15일 : 보유 중인 미달러선물을 반대매매로 중도 청산

(현물환율: 1,130.2원, 11월 만기물 선물환율: 1,130.6원)

⇒ 현물거래에서 1,000,000×(1,130.2-1,176.3) = -46,100,000원 기회손실 발생 선물거래에서 1,000,000×(1,178.3-1,130.6) = +47,700,000원 거래차익 발생

이에 따라 A기업은 현물거래에서의 기회손실을 선물거래에서의 거래차익으로 상쇄한 결과

1,6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현물환거래		통화선물거래	
	현물환율	\$1,000,000의 원화금액	11월만기 선물환 <u>율</u>	\$1,000,000의 원화금액
10. 1일	1,176.3	₩1,176,300,000	1,178.3	₩1,178,300,000
10.15일	1,130.2	₩1,130,200,000	1,130.6	₩1,130,600,000
손 익		₩46,100,000 손실		₩47,700,000 이익

### 통화선물시장

- 미달러선물 야간시장의 거래조건
- 한국거래소는 2009년 11월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연계하여 KOSPI200선물 야간
- 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2014년 12월에는 미달러선물 야간시장을 개설하였다. 야간시간 (18시~익일 5시)에는 CME의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해 매매체결이 이루 어지고 청산 및 결제는 한국거래소가 담당

	미달러선물 야간시장	비고
거래대상	미달러화	
계약단위	1만달러	
가격표시	원(1달러당)	정규거래와 동일
최소가격 변동폭	0.1원	
최소가격 변동금액	1,000원	
증거금률	위탁 3.9%, 유지 2.6%	
결제월	분기월 4개와 그 밖의 월 중 4개(총8개) 단, 정규거래 최종거래일의 경우 7개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은 거래 제외
일일가격 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2,25%	정규거래의 절반
거래시간	[월(저녁)~토(오전)] 18:00~익일 5:00	
청산/결제/일일정산	익일 정규시장분과 합산하여 익일 정규시장 종료 후 함께 청산/결제/일일정산	

•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 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매매 하는 거래

통화옵션거래는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 시장은 1980년대 초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PHLX; Philadelphia Stock Exchange)의 현물환옵션이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미달러옵션이 처음 상장

#### 통화옵션거래와 통화선물거래 비교

	통 화 옵 션 거 래	통 화 선 물 거 래
거래내용	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에 대한 거래	대상자산의 인수도를 위한 거래
거래책임	매입자는 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도자는 매입자의 권 리행사에 대한 의무 부담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 거래이행 책임 부담
손실위험	매입자의 위험은 주문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매도자의 위험은 무한정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 위험이 무한정
거래증거금	매도자에게만 거래증거금 부과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 거래증거금 부과
결제방법	반대매매에 의한 결제 또는 권리행사에 따 른 현금 차액결제	반대매매에 의한 결제 또는 최종 결제일에 대상자산의 인수도

#### 통화옵션거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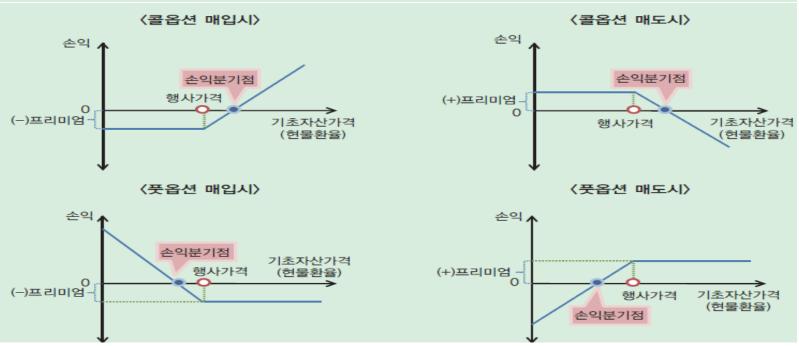


### 한국거래소의 미달러옵션 거래조건

	세 부 사 항	
거래대상	미달러화	
계약단위	1만달러	
결제월	분기월 중 2개와 그 밖의 월 중 2개	
행사가격 설정	ATM(등가격)을 기준으로 10원 간격으로 상하 각 3개(총7개)	
가격표시	프리미엄(원화)	
호가가격 단위	0.1원	
최소가격 변동금액	1,000원(=\$10,000 × 0.1원)	
거래시간	[월~금요일] 9:00~15:15([최종거래일] 9:00~15:00)	
일일가격 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4.5%에 해당하는 옵션이론가격	
단일가격경쟁거래	개장시(8:00~9:00) 및 거래종료시(15:05~15:15)	
증거금률	위탁증거금률 3.9%, 유지증거금률 2.6%	
최종거래일	결제월 세 번째 월요일(공휴일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 <del>종</del> 결제일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에만 행사가능(유럽형)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 차액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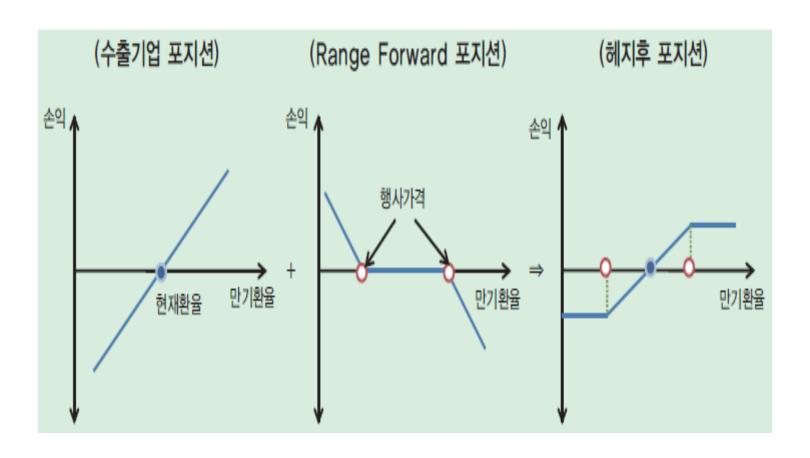
### 통화옵션거래의 손익구조

		시장(현물)환율 〉행사가격	시장(현물)환율 〈 행사가격
콜옵션	매입자	〈권리 행사〉 이익: (시장환율-행사가격)-프리미엄	〈권리 포기〉 손실 : 프리미엄
	매도자	〈의무 이행〉 손실: (시장환율-행사가격)-프리미엄	〈의무 소멸〉 이익 : 프리미엄
풋옵션	매입자	〈권리 포기〉 손실 : 프리미엄	〈권리 행사〉 이익: (행사가격-시장환율)-프리미엄
	매도자	〈의무 소멸〉 이익: 프리미엄	〈의무 이행〉 손실: (행사가격-시장환율)-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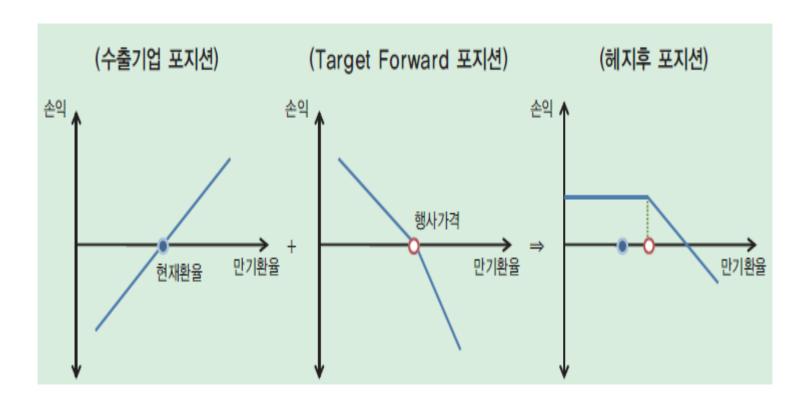
### Range Forward

Range Forward는 동일만기, 동일금액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다른 행사가격으로 동시에 매입·매도하는 거래이다. 옵션 거래고객은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의 프리미엄이 상쇄되어 옵션프리미엄의 지급부담을 줄이는 한편시장환율이 풋옵션 및 콜옵션 행사환율을 벗어나더라도 환위험 손익을 일정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 Target Forward

Target Forward는 동일만기, 동일 행사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입·매도하되 옵션금액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래이다. 환율하락 위험을 헤지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풋옵션을 매입함과 동시에 풋옵션 매입금액의 일정배수(통상 2배)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매도한 경우 거래비용(옵션프리미엄) 없이 헤지거래를 할 수있다. 반면 환율이 행사환율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콜옵션 매도의 레버리지 영향으로 환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될 위험에 노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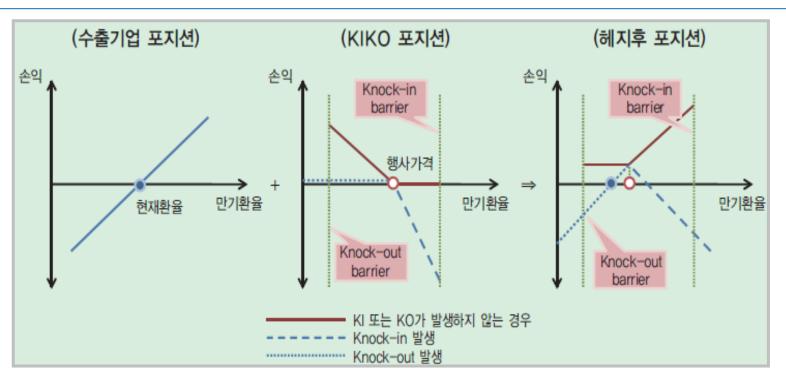
### KIKO(Knock-in Knock-out)

KIKO는 Target Forward에 환율이 특정 Barrier에 도달하는 경우 옵션이 발효(KI; Knockin)되거나 소멸(KO; Knock-out)되는 조건을 부가한 상품

수출기업의 경우 옵션기간 중 환율이 KI barrier 이상으로 상승하면 콜옵션(매도)이 발효되고 KO barrier 이하로 하락하면 풋옵션(매입)이 소멸되는 구조

시장환율이 콜옵션의 KI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TargetForward와 마찬가지로 행사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환율이 KI barrier를 상회하면 콜옵션이 발효되고 환율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은 옵션만기시수출대금의 2배 이상을 시장환율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환율이 KO barrier를 하회하면 풋옵션 소멸로 환리스크에 노출된다.



•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이란 채권, 대출금 등과 같이 차주(또는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분리하여 이를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 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융상품

일반적으로 대출, 증권 등 금융자산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화하는 시장위험 (market risk)과 차주의 부도,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등락하는 신용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위험은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선물환, 스왑, 옵션 등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신용위험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그 위험을 헤지

#### (신용파생상품거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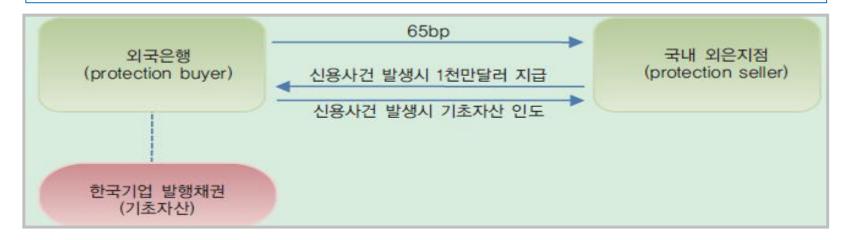
-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 신용연계증권(CLN; Credit Linked Note)
- 신용스프레드옵션(CSO; Credit Spread Option)
-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

###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 매입자(protection buyer)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기초자산(109)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 매도자(protection seller)로부터 손실액 또는 일정금액을 보전받기로 하는 거래

#### 신용파산스왑거래(예시)

- ① 외국은행(protection buyer)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 발행채권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동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용파산스왑계약을 국내 외은지점(protection seller)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기 간 : 5년(2015년 8월 31일~2020년 8월 31일)
- ·금 액(notional amount): 1천만달러
- ·수수료 : 신용위험을 전가한 외국은행이 국내 외은지점에 연 65bp 지급
- ② 신용파산스왑 기간 중에 국내기업이 지급불능상태(신용사건 발생)에 빠지면 외국은행은 국내 외은지점으로부터 1천만달러를 지급받고 한국기업 발행채권(기초자산)을 인도한다.



####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보장 매입자가 기초자산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자본수익 등 총수익을 보장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약정이자(통상 Libor+스프레드)를 수취하는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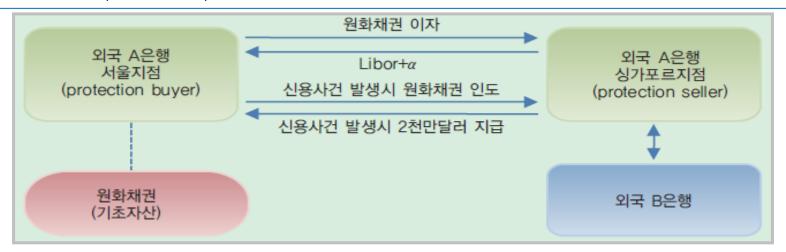
이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해당자산을 매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며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만을 전가하는 신용파산스왑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위험도 이전

### 총수익스왑거래(예시)

- ① 외국 A은행 서울지점(protection buyer)은 원화채권(액면 23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은행 싱가포르지점 (protection seller)과 아래와 같이 Total Return Swap(TRS)을 체결하였으며 A은행 싱가포르지점은 이를 헤지하기 위하여 외국 B은행과 정반대의 TRS계약을 체결하였다.
- ·기 간 : 1년(2019년 9월 17일~2020년 9월 17일)
- ·이자교환: A은행 서울지점은 싱가포르지점에 원화채권 이자를 지급하고

Libor(1년만기) + α의 이자를 수취

- ·금 액: 2천만달러
- ② 향후 계약기간 중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A은행 서울지점은 A은행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2천만달러를 수취하고 원화채권(액면 230억원)을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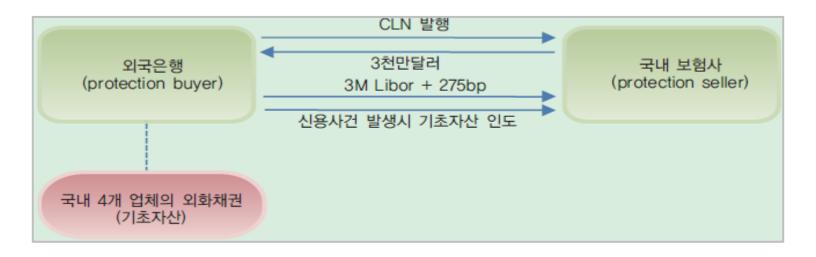


#### 신용연계증권(CLN; Credit Linked Note)

보유 중인 채권 등의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 매입자가 기초자산을 근거로 별도의 증권(신용연계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보장 매도자에게 매각한 후 신용사건 발생시에는 신용연계증권을 상환하지 않고 해당기초자산을 대신 인도하는 거래

#### 신용연계증권의 발행(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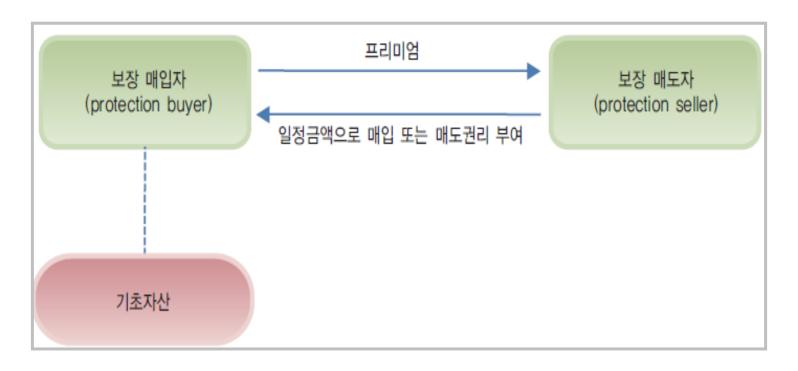
- ① 외국은행(protection buyer)은 국내 4개 업체의 외화채권을 바스켓(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연계증권을 아래 조건으로 발행하여 국내 보험사(protection seller)에 매각하였다.
- ·기 간 : 3년(2017년 9월~2020년 9월)
- ·금 액(notional amount): 3천만달러
- ·신용연계증권금리 : Libor(3개월만기) + 275bp
- ② 향후 계약기간 중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외국은행은 3천만달러를 상환하지 않고 국내 보험사에게 기초자산인 채권을 대신 인도한다.



### 신용스프레드옵션(CSO; Credit Spread Option)

옵션 매입자(보장 매입자)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옵션 매도자(보장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약정된 가격(또는 신용스프레드)으로 기초자산(또는 기초자산의 신용스프레드)을 매입(콜옵션) 또는 매도(풋옵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 신용스프레드란 증권이나 대출의 금리에서 무위험자산(예:미국채)의 금리를 차감한 수치 혹은 두 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률간의 차이다.

신용옵션은 통상 기초자산 발행자의 신용도 변화에 따른 스프레드 변화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정산하며 미래의 자산비용이나 수익을 사전에 확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

다수의 대출자산, 채권 등 기초자산군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이전 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선·후순위 채권을 의미한다. 이때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대출채권은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채권은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CDO(CollateralizedDebt Obligation)로 통칭할 수 있다.

###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의 구조

